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합10156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2. 15 선고 2021나1254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합101569 판결

###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상

담당변호사 김중훈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5.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10.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D일자 접수 E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D일자 접수 F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D일자 접수 G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1)의 대출과 C의 연대보증

H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12. 10.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2013. 1. 28.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 당시 C은 위 7억 5,000만 원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1억 2,000만 원, 위 5,000만 원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대출금 채권의 양도양수

1) 위 각 대출금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I 주식회사, J 유한회사(이하 'J'라고 한다)로 각 순차 양도되었다. J는 H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7. 4. 19. 493,620,109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는 2018. 10. 15. J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권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위 각 대출금 채권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J는 2018. 11. 27. H와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특허권이전등록

C은 2020.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다.

## 라. 관련 민사소송

원고는 H와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7. 14.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4145). 이에 대하여 H와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3. 25.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0나62029),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에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J의 담당자인 L로부터, 경매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H와 C의 대출금 채무 탕감을 조건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M의 채무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채무 확인에 협조함으로써 2016. 6.경 J로부터 경매 후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 면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H와 C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H와 C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투자자의 투자금반환소송, 직원의 식품개발기술 유출 등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3. 12. 30.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11.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회합58). 회생절차 개시 당시 피고의 최대주주는 C의 배우자 N였으나2), 회생절차에 따라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등이 이루어져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P가 피고의 지분 52.4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N의 지분은 5.58%, C의 지분은 0.8%로 각 감소하였다.

(2) 피고의 최대주주가 된 P는 2015. 8. 13. 주주들에게 ‘C와 N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안건 등으로 2015. 8.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P, C, N는 2015. 10. 25. ‘P는 N에게 피고의 지분 52.42%와 피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설정한 가처분과 압류를 해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을 모두 취하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C와 N는 연대하여 P에게 2억 원을 2016. 3. 말까지 지급하고, 위 금전지급이 이행될 때까지 N는 P가 양도한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금전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016. 4. 1.자로 P가 양도한 피고의 지분은 별도 약정 없이 다시 P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C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다. 위 금전 지급이 이행되면 P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100970 판결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같은 날 채권자협의체 대표채권자 Q에게 'N와 연대하여 2016. 3. 말까지 P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확약서는 확정일자가 없는 증서들로서 언제든지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P는 C의 동업자인 점,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C은 2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2020. 3. 10.경에서야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P, C, N가 이 사건 약정서를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P와 C은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P가 C을 위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만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C과 N의 지분은 합계 6.38%에 불과함에도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현재까지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C 또는 N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확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C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sup>3)</sup> 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의 최대주주인 P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P로부터 피고의 지분 52.42%를 양도받음으로써 대표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설정한 가처분과 압류를 해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을 모두 종결시킴으로써 피고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는 이 사건 약정서 제8항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오승희, 판사 임현화

별지

## 특허권의 표시

1. 특허번호 :   
 출원연월일 :   
 출원번호 :   
 공고연월일 :   
 특허결정 연월일 : 2008년 02월 18일  
 청구범위의 항수 : 4  
 분류기호 : A23L 1/182, A23L 1/10  
 발명의 명칭 :   
 존속기간 만료일 : 2027년 04월 10일  
 등록권리자 및 최종권리자 : 주식회사

2. 특허번호 :   
 출원연월일 :   
 출원번호 :   
 공고연월일 :   
 특허결정 연월일 : 2011년 04월 07일  
 청구범위의 항수 : 6  
 분류기호 : A23G 3/52, A23L 1/18, A23G 3/50, A23G 3/00  
 발명의 명칭 :   
 존속기간 만료일 : 2028년 09월 12일

등록권리자 및 최종권리자 : 주식회사

3. 특허번호 :

출원연월일 :

출원번호 :

공개연월일 :

특허결정 연월일 : 2011년 04월 07일

청구범위의 항수 : 7

분류기호 : A23G 3/52, A23L 1/18, A23G 3/50, A23G 3/00

발명의 명칭 :

존속기간 만료일 : 2028년 09월 12일

등록권리자 및 최종권리자 : 주식회사

1) 이하 'H'라고 한다.

2) 피고의 지분 중 70%는 N, 10%는 C, 20%는 투자자 O이 보유하고 있었다.

3) N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C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